(우편, fax신청자 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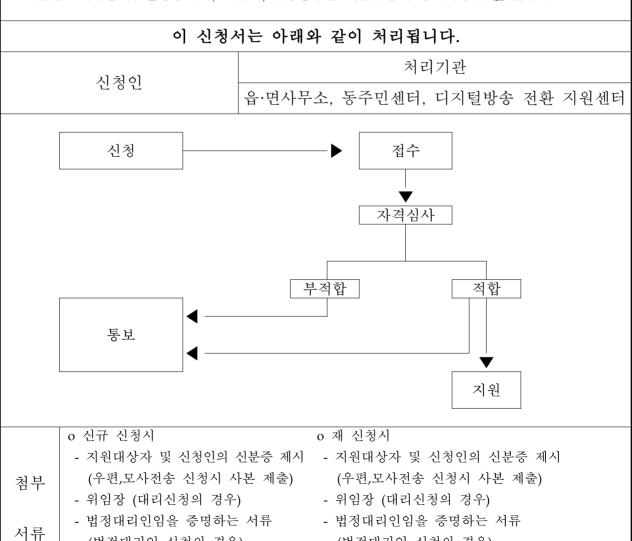
			TI QI	\I .	LII		<u>(† 2, 190,28 † 3)</u>	
<u>지 원 신 청 서</u>								
			1 TV방송을 안테나를 통해 직접	시청	하는 기초생활	할수급권자		
등이	기 신청 :						14일 이내 지원결정	
	분	류	□ 기초생활수급자 □ 국가유			당애인 🗆	차상위계층 ()	
지	성	명		등록번	등록번호 -			
원	자택	주소	우편번호: -					
대 상	<u></u> 전화	 번호	() –		 휴대전화			
⁰ 자	 지원	선택	 □ DTV 구매보조() 미디	 지털 컨버	 터 무상지원	
	주거		□ 단독 □ 연립ㆍ다세대 □ 아파트 □ 기타 (
기술지원사항: 문의처: 디지털방송 콜센터 080-2012-012								
①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								
방송통신위원회(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), 행정안전부(지					② 서약서 방송통신위원회(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) 귀중			
			, 한국방송공사,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					
본인은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정부지원 신청					본인은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정부지원 신청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 □			
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의 기재사항 에 동의합니다. □ 1. 지원대상가구가 현재 지상파 아날로그텔레비전 병								
					수신설비를 소유하고 있으며, 신청 시 및 신청 후 지			
1. 지상파 디지털방송 선환 성무지원 업무에 개인성모를 원을 받을 때까지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병								
할 수 있는 텔레비전, 비디오, 주신기 등의 주신							•	
			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, 주소 있는 경우 변경 후의 정보를 포	1	없는 환경일 것.(공동수신설비 개선을 통하여 디지털방			
함)를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센터(이					송 수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)			
하 '센터'라 함)에서 행정안전부(지방자치단체 포함),					2. 지원대상가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신청하며, 지원			
보건복지부, 한국방송공사,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 공하고 지원 결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락하기					완료 후 5년간은 교부 목적에 반하여 사용, 양도, 교			
			보를 이용하는 것		환, 대여, 담보, 폐기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을 것			
3. 센터의 조회에 응하여 지원 결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 3. 이 신청에 대하여 부정형							위가 발견된 경우, 지급된	
			∥ 포함), 보건복지부, 한국방송공사,	수신기기 및 안테나 개·보수 비용 등의 반환 또는				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센터에 제공하는 것					상당액의 실비 배상 등의 책임을 질 것			
4. 지원 실시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센터 (③)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정한 (부동의 시 해당 서류 제출) 세대별 주민등							서대별 주민등록표	
							<u>●/ </u> 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	
			센터, 센터의 위탁사업자, 공동수신	법」기	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			
설년	설비 설치자 등에 제공하는 것				여 담당공무원이 필요시 위의 「담당공무원 확인사 항」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□			
5. 동의서 유효기간 : 2013년 12월 31일까지								
위 각 항(☑) 에 대하여 동의하며,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.								
			20 년		일		/ - I = I	
신청인 :(서명 또는 인)								
방	송통신		위원장 귀하		TI ^ 0'			
선청인 본인 확인 접수처					접수일		20	
	인	- 본	인		접수처			
_	_	□ 다	리인		담당자		(서명)	

(작 성 요 령)

- 1. 지원대상자를 구분 선택☑ 하고,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()안에 다음 각 호 중 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
- ②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
- 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(장애아동수당)을 지급받는 자
- ④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(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상인자 포함)
- ⑤ 「장애인연금법 시행령」 별표에 따라 부가급여를 받는 자
- 2. 신청인은 DTV구매 보조와 디지털 컨버터 중 반드시 하나 만을 선택√ 합니다. ※ DTV구매보조를 선택한 경우, 희망하는 TV유형을 홍보물에서 선택하여 번호를 기재합니다.
- 3. 지원 대상 가구의 주거형태를 선택 ☑ 합니다.

(법정대리인 신청의 경우)

- 4. 기술지원 항목은 지원센터에서 작성합니다.
- 5. 개인정보의제공 및 활용동의서, 서약서,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여부를 ☑ 합니다.



(법정대리인 신청의 경우)

- 지원대상 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